

#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77
----------	-----

2019년 6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오한아, 김창원, 김춘례 의원(찬성자 8명)
- 나. 발의일자 : 2019년 5월 24일
- 다.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 라. 상정결과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년 6월 19일,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오한아 의원)

### 가. 제안이유

- 마을미디어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상 공유, 생활 문제 토론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참여민주주의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나. 주요내용

- (1) 시장이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함(안 제3조)
- (2)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3)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4) 마을미디어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의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5)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9조)

##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없음
- (2)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3) 협의사항 : 없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정욱)

#### 가. 조례 제정 개요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마을미디어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미디어의 성장을 도모해 마을공동체 문화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우리 위원회 오한아, 김창원, 김춘례 의원이 공동 발의(찬성자 8명)하였음.
- 마을미디어는 지역단위 공동체의 주민참여를 도모하고, 참여민주주의의 강화를 견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시 국정과제에 포함되었고, 참여정부 이후 ‘지역미디어센터’가 설치되는 등 국가 주도의 정책을 통해 성장해 왔음.

현재 마을미디어는 신문, 라디오, 영상 등의 미디어를 통해 약 300여개가 활동 중이며, 지역미디어센터도 45개소로 확대 운영 중<sup>1)</sup>임.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2년 제정)에 근거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일부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2012년부터 7년째 추진 중인데, 2018년에는 76개 마을미디어 단체를 지원(10억원)하였고, 예산 규모도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이임.

1) 2018.2.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통계

##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 현황

연 도	예산(백만원)	지원 규모(단체 수)	비 고
2012년 (우리마을미디어 문화교실)	500	46개 과정 600명 교육	
2013년	615	25	- 마을미디어 활동단체 지원 - 교육프로그램 운영 -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 네트워크 정기모임 진행 - 마을미디어 축제 개최 등
2014년	615	41	
2015년	715	53	
2016년	915	65	
2017년	1,000	70	
2018년	1,000	75	
2019년	1,150	78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0.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문화체험 등 각종 교육과 문화 활동 지원 사업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그러나 동 사업은 어디까지나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서울시 소관 부서 또한 마을공동체를 담당하는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이 아닌 문화본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정합성, 전문성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

- 마을미디어는 마을공동체의 성격 대부분을 갖고 있기는 하나 ‘미디어’를 근간으로 하는 특성이 뚜렷해 마을공동체 사업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 문화본부가 ‘마을공동체’나 ‘미디어’ 특성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혹은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 차례 개진한 바 있음<sup>2)</sup>.

또한 우리 위원회는 2019년 1월 23일 <2019년 서울시마을미디어 정책 토론회>를 열고, 서울시 문화본부에 서울혁신기획관 및 시민소통기획관과의 논의를 통해 소관 부서를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법적 근거가 미비한 마을미디어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마을미디어 관련 조례를 시행 중에 있는 곳은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16.12.30. 제정), 대전광역시('19.2.15. 제정) 총 세 곳임.

- 한편 서울시 문화본부는 2015년부터 성북구 길음동에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 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은 당초

---

2) 우리 위원회는 문화본부의 서울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과 더불어 현재 설립·추진 중인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소관이 시민소통기획관과 매칭된다고 주장하였음.

자치구 시설 건립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문화시설과는 2018년 7월 5일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을 통해 마을미디어센터 등을 포함한 시립시설을 신규·확장하였음.

동 시설은 2019년 12월 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는 각 시설의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데, 마을미디어센터의 경우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가 집단에게 운영을 맡길 예정임.

###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시설별 공간 재조정(안) 〉

(단위 :  $m^2$ )

구 분	당초 계획	실시설계 준공	설 계 변 경 (안)			
			합 계	전용면적	공유면적	주차장면적
총 계	7,865	9,484.68	9,473.63	5,800.93	1,372.64	2,300.06
소 계	2,000	1,951.77	4,220.86	2,584.54	611.56	1,024.76
시립	미디어스타트업	-	1,774.73	1,086.71	257.14	430.88
	사청자미디어센터	2,000	2,074.14	1,270.05	300.52	503.57
	마을미디어센터	-	371.99	227.78	53.90	90.31
소 계	5,865	7,532.91	5,252.77	3,216.39	761.08	1,275.30
구립	생활체육시설	2,000	2,145.50	1,313.74	310.86	520.90
	도서관	1,000	1,464.61	896.81	212.21	355.59
	공연장	865	1,642.66	1,005.84	238.01	398.81
기타(주차장)	2,000	시설별 주차면적 배분	※ 주차장은 시설규모에 비례하여 배분			

※ 연면적 감소 :  $11.05m^2$  (지상2, 3층 방송스튜디오 오픈으로 감소)

→ 시립(광역미디어) 시설  $4,220.86m^2$ (44.5%)/구립(생활문화)시설  $5,252.77m^2$ (55.5%)

## 나. 조례안 조문별 검토

- 안 제1조는 동 조례안의 목적이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음.

동 조례안이 목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는 규범적·처방적 관점에서 ① 지역의 분열과 파괴를 최소화하는 조절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② 참여민주주의 강화를 견인하고, ③ 현대사회 문제 해결의 전초 기지적 역할을 수행하며, ④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도모한다고 할 수 있고(곽현근, 2014), 마을미디어는 이러한 특성을 촉진하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음.

- 안 제2조(정의)는 ‘마을미디어’를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정보전달매체(영상, 음성, 인쇄 매체 등)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마을”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뜻<sup>3)</sup>함.

-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제1항에서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제2항에서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익성’이란 ‘공공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에 대해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관계되는 공통의 이익을 지칭하는 단어이며(이한영, 2009), 현대사회의 미디어 공익성 개념은 ‘정치적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과 정보의 신뢰성’이 담보된 것으로 볼 수 있고<sup>4)</sup>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동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단순 친목, ②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③ 특정 종교 교리 전파 목적의 경우는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는 시장에게 매년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 지원계획은 안 제4조제2항제2호를 통해 유관 기관과의 연계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현재 서울시가 협약을 통해 일부 출연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포함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 재단화를 추진하고 있는 tbs교통방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과 연계하여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이에 대해 시장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는 시장이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설치·

4) 주성희, 김대규, 김성규(2012), 「스마트 미디어 시대 방송의 공익성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 안 제7조(사무의 위탁)는 안 제6조의 지원센터 운영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는 매년 공모사업으로 선정·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안정성이 저해<sup>5)</sup>된다는 마을미디어 관계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더불어 2020년부터 운영 예정인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마을미디어센터 운영의 사무도 함께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동 지원센터 운영 공모사업은 계속해 같은 업체가 도맡아 독점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지속적인 마을미디어 전문가 양성, 민간위탁 선정의 공정성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는 마을미디어에서 생산한 우수콘텐츠를 서울시 소속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콘텐츠 확산과 마을미디어 활성화 차원에서 타당성은 인정되나, 저작권 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콘텐츠 사용에 대한 사전 협약 등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것임.
- 안 제9조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 단체,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 체계 구축을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5) 현재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은 연초인 1~2월 공모사업 선정 절차를 통해 본격적으로는 3월 시작하고 12월에 종료되므로, 1월~3월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바 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동 조례안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미디어 관련 조례에는 포함된 '위원회' 관련 규정이 빠져있는 등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과 정책의 기본 골격만을 규정한 기본 조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따른 마을미디어 소관 서울시 실국의 정리가 이행되지 않아 제대로 된 정책·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며, 향후 소관 정리 이행이 선결되고 마을미디어 관련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현재 문화본부 문화예술과는 2020년부터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 센터 내 마을미디어센터를 포함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바, 이번 정례회 이후 동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서울시청자미디어 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 예산안 등 우리 위원회의 동 사업과 연계된 안건들의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그러므로 서울시 문화본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관련 실국과 검토·협의해 빠른 시일 내로 결론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며, 동 조례안도 실국 조정에 따라 이관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편 동 조례안에 대해 현재 소관부서인 문화본부 문화예술과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입법에 동의한다고 밝힘.

####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 : 우리 위원회는 시민소통기획관과 문화본부간의 마을미디어 업무 소관 조정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수차례 개진한 바 이에 대한 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보임.
- 답변 : 최근 시민소통기획관과 업무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빠른 시일내로 논의를 마무리하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 5. 토론요지 : 없음.

####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오한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77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4일

발 의 자 : 오한아, 김창원, 김춘례 의원  
(3명)

찬 성 자 : 박기재, 이영실, 안광석,  
김소영, 최영주, 이병도,  
송재혁, 문병훈 의원 (8명)

## 1. 제안이유

- 마을미디어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상 공유, 생활문제 토론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참여민주주의 및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2. 주요골자

- 가. 시장이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마을미디어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의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마.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없음

##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매체 등을 통한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추진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 주요 사업계획

2.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
2. 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등의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3. 시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활동
4.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시장은 마을미디어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협력 체제의 구축)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